

참 고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RFP 주요질문 사항 [추가]

번호	구분	주요질문	답변
1	연구 책임자	3책 5공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기관형(해외기관이 공동기관형으로 참여하며 연구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은 4책 6공에 해당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p.12 참고)
2	계획서 양식	영문양식이 제공되나요?	영문 RFP와 영문계획서 작성양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연구비	공동기관형의 경우, 해외기관이 부담하는 연구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본 과제 수행을 위해 해외기관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혁신법시행령제 64조 참고)로 현금과 현물 모두 가능합니다. 현금의 경우 국내주관기관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추후 안내예정)
4		해외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 시 현금, 또는 현물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물 또는 현금을 매칭할 수 있습니다.
5		해외기관으로 연구비 배분 기준이 있나요?	연구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책임자가 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6		해외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외기관의 간접비는 어떤 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나요?	해외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38%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위탁연구	공동연구기관도 위탁연구를 둘 수 있나요?	공동연구기관은 불가능하고, 주관연구기관만 가능합니다.
8	증빙서류	LOI의 별도 포맷을 제공하나요?	참고양식을 제공 예정입니다.
9	지원대상	공동연구책임자가 2개 이상의 과제로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10		해외공동연구책임자가 2개 이상의 과제로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11	해외기관 참여	유럽 국가도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미국과의 공동연구만 지원합니다.
12		미국 보스턴 지역 내 기관만 신청 가능한가요?	미국 소재 대학, 연구소, 병원의 소속 연구자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13		이 사업의 해외 연구개발기관이 해외의 "회사"도 가능한지요?	불가능합니다. 해외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4		과제 1개당 해외연구개발기관은 1곳이어야 하는지 여러 기관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해외기관 1개 이상 지정 가능합니다.

15	연구자 구분 및 조건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책임자 외 연구자는 '참여연구자'로 구분되는지요?	참여연구자로 구분됩니다. (1공동에 해당됩니다)
16		해외 연구자가 공동기관형으로 들어올 경우 3책 5공과 같은 제한을 받는가, 아니면 보스턴 코리아 과제에만 중복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한가요?	해외연구자는 3책5공 제한되지 않습니다.
17		국내 주간기관 연구책임자가 사업기간 내에 정년퇴임을 하는 경우에 과제 지원이 가능할지요?	해당기관에서 과제기간동안 지원을 보장한다는 '과제참여 협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8		연구자로 의료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아닙니다. 자유롭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19	과제구성	국제공동연구기관이 해외연구기관이 복수(2개이상)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20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에서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주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없음은 어떤 뜻인가요?	기관기준으로 주관기관이 A기관이면 공동이나 위탁으로 A기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개의 과제 내에서 기관간 중복이 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21		미국정부소속 연구자(예: NIH), 미국 공익법인 (Public Benefit Corporation), 국내에 위치한 국제기구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한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국가R&D과제를 진행하셨던 기관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22		해외기관이 주관기관을 맡을 수 있는지요?	불가능합니다. 국내기관만 주관기관을 맡을 수 있습니다.
23		해외기관 간 인력교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24		연구개발과제번호는 어떤 것을 입력해야 하나요?	IRIS에 과제 생성 시 부여되는 과제번호(RS-로 시작)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5		과제 신청 시, 현물 부담액 관련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별도의 부담확약서류는 없습니다. 연구계획서에 기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master파일의 'III. budget plan' 2번과 '2-3. [collaboration-US]' 파일 'III. budget plan' 3번에 해당하는 'Research resources~', 에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6	연구비 구성	현물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로 부담하면 되는지요?	24번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27		해외기관이 부담할 현금 또는 현물 연구개발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필수사항인지요? 현금 또는 현물이니 현물만 가능한지? 구체적인 비율이 있는지요?	해외기관이 부담할 현금 또는 현물 연구개발비는 필수사항입니다. 항목과 비율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28		연구개발계획서 PART1>표지>연구개발비>그외 기관 등의 지원금>기타>현물에 반영하고 [합계>현물]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29		RFP에 '해외기관이 부담할 현금 또는 현물 연구개발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해당 부분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같은 것들이 따로 있을지요?	24번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30		해외기관의 간접비 상한액은 38% 인가요?	해외기관 간접비는 직접비의 38% 이내입니다.
31		해외기관에서 현금을 제공할 경우 국내주관기관으로 입금 뒤 다시 주관기관에서 해외기관으로 연구비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32	위탁연구	기관부담금에 위탁기업이 해당되는지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RFP첨부8은 기업이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수제출입니다)
33		위탁연구로 미국기관을 들수 있는지? 위탁기관이 미국이외 타국가인 경우 가능한지요?	위탁연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선정평가 시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주관기관-해외기관 계약체결 과제 선정 후 1차년도 수행중에 진행하면 되는지요?	네. 1차년도에 진행하면 됩니다.
35	협약/계약 체결	연구기관 간 연구개발성과물 소유 및 귀속에 대한 계약 체결의 경우, 과제 공고문에 적시된 내용에 맞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첨부1 제안요청서 p.5~6)	과제 선정이후 기관간 계약 체결사항입니다. 공고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선정 이후 사업단에서 지원예정입니다.
36		"R&D Collaboration Agreement" 파일 내 해외협력기관에서 서명을 받는다면 서울대병원의 누구에게 이메일을 전해야 하는지요? 해외기관과 서울대랑 계약을 맺는 것인지요? 국내기관들도 서울대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요?	협약 주체를 포함하여 협약서 최종본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37		연구과제 제안시 총괄 20페이지, 주관 10페이지, 공동 10페이지 라 쓰여 있는데, 국내기관이 총괄 주관이고, 국외 기관이 "공동기관형" 국제공동연구기관이라 하면, 국내 기관은 총괄 20 + 주관 10, 국외기관 공동 10 이렇게 40페이지 작성인가요? 아니면 국내기관은 총괄 20만 쓰고 국외기관 10 합쳐서 30페이지 작성인가요?	기관별로 계획서 양식 1개씩을 작성하시고, 총괄로 master를 취합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페이지 수는 research plan에만 해당되는 제한입니다. research plan으로 국내 기관은 총괄 20p + 주관 10p + 국외기관 공동 10p 총 40페이지 작성입니다.
38	계획서 및 추가서류	연구계획서 작성 분량 관련 예를 들어 책임 연구기관 (1기관), US 참여연구기관 (1기관), 국내참여collaborator (3기관) 으로 구성된 컨소시움이라면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계획서 양식으로 2-2, 2-3, 2-4 워드 파일은 기관 기준으로 한 부씩 작성이 필요합니다. 국내 공동연구기관이 3개 기관이면 2-4 파일을 각 기관별로 작성하셔서 3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 master (1부), 2-2 주관기관 (1부), 2-3 해외공동기관 (1부), 2-4 국내공동기관 (3부)입니다. 주관기관에서는 계획서를 IRIS에 파일 업로드 시 해당 계획서 파일을 모두 취합하여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39		Progress Report Publications List가 무엇인지요?	과제제안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부터 얻어진 논문, 특허, 출판물 등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0		Reference (참고문헌) 부분은 10페이지 제한에 속하는지요?	'l. research plan'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41		해외기관의 경우 기관직인이 있는 IRB 확약서를 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신청시 해외기관도 IRB 확약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과제신청시 IRB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 후 협약시까지 IRB 승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42		R&D agreement는 과제 제안서를 낼 때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나중에 선정이 되고나서 작성하면 되는 서류인지요?	과제 선정 후 사업단과 해외기관이 맺는 협약 양식 예시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	성과기준	제안요청서에 보면 '논문 성과는 한미 연구책임자가 모두 저자에 포함되고, 1인 또는 공동 교신 저자여야함'	논문성과는 해당성과에 과제사사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성과인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연구자는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성과평가 시 해당 사유가 승인되면 연구성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44	연구분야	자율공모에서 첨단바이올을 포함한 바이오 영역의 전 분야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의료기기분야가 포함되는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일반적인 분류체계에서 큰 범위의 바이오 분야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45	연구비 지급 및 정산	해외기관에 연구비 지급방식/사용방식(국내는 이지바로)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46		해외기관으로 지급되는 연구비가 일시불과 분할지급 또는 사업비 정산 후 지급인지요?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47		연구비 정산 관련하여, 국외 연구기관은 자신의 기관 기준에 따라 정산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국내처럼 국내출장, 재료비, 인건비 등 모든 항목에 증빙을 붙여서 "국내 시스템에서" 정산을 하나요?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